

## 자체평가 및 외부기관 평가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가천대학교의 교육, 연구, 조직운영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필요한 절차,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외부기관평가 준비 및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이 규정에서 ‘자체평가’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대학 자체적으로 점검·평가하는 것을 말하며, 학과 평가와 행정부서평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. (개정 2013.01.01., 2017.12.20.)

② ‘외부기관평가’라 함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관련기관 및 각종 언론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. (개정 2014.11.18.)

**제3조(평가주기)** 자체평가는 2년마다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평가, 행정부서평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시행하며, 외부기관평가는 해당기관의 평가 시행주기에 의한다. (개정 2013.01.01)

**제4조(자체평가 방법)** ① 기획처장은 자체평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 (개정 2013.01.01)

② 기획처장은 자체평가의 기준, 방법 등 시행계획을 모든 부서에 사전 공지하여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01.01)

③ 자체평가는 모든 부서에 대해 일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평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. (개정 2013.01.01)

④ 평가방법은 평가지표 관리부서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.

**제4조의 2 (외부기관 평가)** ① 외부기관평가에는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은 후 불참 할 수 있다.

② 주관부서(학과)장은 기획처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부기관평가의 참여 및 준비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행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01.01)

③ 주관부서(학과)장은 외부기관평가 준비를 위하여 해당평가 준비에 적합한 관련 위원회 및 TFT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총장의 허가없이 외부기관평가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(학과) 및 그

### 3-1-27~2 제3편 행 정

소속 교직원에게 인사상 또는 각종 행·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.

**제5조**(자체평가 기준) 자체평가의 평가영역, 평가지표, 배점 등의 평가기준은 자체평가기획위원회에서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한다.

**제6조**(자체평가기획위원회) ①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기획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장단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4.11.18.)

② 자체평가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13.01.01)

1. 자체평가를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 수립
2. 자체평가에 대한 예산
3.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제출 안건
4.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
5. 대학 구성원들의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유도 방안

**제7조**(자체평가연구위원회) ①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평가 영역별로 전문성이 있는 전임교원 및 해당 행정부서의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4.11.18.)

② 자체평가연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③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대학정보공시제의 공시항목 자료조사
2. 자체평가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, 검토 및 서식 작성
3. 자체평가 지표에 대한 관리
4. 자체평가 수행 및 보고서 작성 (개정 2017.12.20.)
5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**제7조의 2**(자체평가실무위원회) ① 자체평가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부서 및 기관의 팀장 또는 담당자로 구성된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 (신설 2013.01.01)

② 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제7조3항의 사항을 지원하며, 간사는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간사가 겸한다.

**제8조**(자체평가위원의 임기) 보직자인 자체평가연구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,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**제9조**(위원의 처우) 자체평가 및 외부기관평가 위원에게는 평가업무수행 및 준비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**(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) ① 기획처장은 관련 부서장에게 해당 학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통보하고, 해당 부서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처에 서면으로 제출한

다. (개정 2013.01.01., 2017.12.20.)

② 이의신청은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검토와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. (개정 2013.01.01)

**제11조**(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활용) ① 자체평가 결과는 대학알리미 또는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. (개정 2013.01.01., 2017.12.20.)

②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 단위부서(학과 포함)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·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 (개정 2017.12.20.)

③ 자체평가의 결과는 중·장기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수립, 구조조정, 교·직원 인사평정 반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. (개정 2013.01.01)

**제12조**(기타) 자체평가 및 외부기관평가 준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및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